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선갑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541
----------	------

발의연월일 : 2016년 11월 16일
발 의 자 : 김선갑·김인제·김미경
이상목·박기열·김동욱
김기대·송재형·문형주
장우윤·박마루·우미경 의원
(12명)

1. 제안이유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의장의 인사추천 권한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자문기구인 ‘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운영위원장이 당연 수행토록 하여 인사추천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의회 인사추천위원회의 위원장을 의회 운영위원장이 맡도록 함
(안 제4조제2항).

3. 참고사항

- 가. 관련 법령 : 해당사항 없음
- 나. 예산 조치 : 해당사항 없음(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별첨)
- 다. 기타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의회 인사추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제4조제3항 각 호를 제외한 부분 중 “위원장 이외의 위원은”을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의회 의원 2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각각 1명을 호선한다.</u></p> <p>③ <u>위원장 이외의 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사무처장 2. <u>의회 운영위원장을 포함한</u>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 	<p>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한 7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 <u>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 운영위원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u></p> <p>③ <u>위원은</u>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의회사무처장 2. <u>의회</u> 의원 2명 3. 지방의회 또는 인사행정 관련 경험이 풍부하거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 4명